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1
----------	-----

제출연월일 : 2013. 10.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조국을 위해 희생 헌신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해 보훈영예수당을 인상하고, 조례 문구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코자함 .

2. 주요내용

가.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중

- 예우 및 지원대상자를 “지원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자”로 함.

나.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조)중

- 보훈영예수당 “5만원” 을 “10만원”으로 함.

다. 내용전달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문구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2조
-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예산조치 : 2014년 예산에 828,000천원 반영 예정임.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2) 입법예고(2013.10.1.~2013.10.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비용추계서 : 붙임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군에 거주하는”을 “지원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보훈대상자”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 “5만원의”를 “10만원의”로, “한다)과 사망 시에는”을 “한다)을 지급하고, 수당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을 “제6조에 따른 보상을 받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을 “제22조에 따른 보상을 받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2조의 규정”을 “제2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u>군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u></p> <p>제8조(보훈영예수당과 사망위로금) 군수는 다음 각 호의 <u>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보훈영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1개의 항목에 대하여만 지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u>규정에 해당하는 자</u>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u>규정에 해당하는 자</u>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u>규정에 해당하는 자</u> 	<p>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 ----- <u>지원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u> ----- -----.</p> <p>제8조(보훈영예수당과 사망위로금) - -----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u>----- ----- <u>10만원의</u> ----- ----- <u>한다)을 지급하고, 수당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그</u> ----- ----- <u><단서 삭제></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u>제6조에 따른 보상을 받는 --</u> 2. ----- ----- <u>제22조에 따른 보상을 받는 --</u> 3. ----- - <u>제2조</u>-----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영예수당 5만원을 10만원으로 상향조정

○ 관련조문

- 제8조(보훈영예수당과 사망위로금)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보훈영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한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기존 5만원의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하였으나 10만원으로 상향조정 지급하고 현 지급대상인원 690명으로 계산
 - 연간 영예수당 감소액 : 60명 × 100,000원 × 12개월 = 72,000,000원
 - ※ 연간 사망위로금 : 60명(연사망인원) × 150,000원 = 9,000,000원

나. 추계 결과

- 현재 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자 : 690명
- 보훈영예수당 (연간) : 690명 × 100,000원 × 12개월 = 828,000,000원
(수당 50,000원 인상에 따른 연 414,000,000원 증액)

다. 재원조달방안

- 군 자체수입(지방세 수입)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주민생활지원실 복지기획담당 이 정 균
연락처	(033) 330 -2341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계	
세 입							
세 출	828,000	756,000	684,000	612,000	540,000	3,420,000	
보훈영예수당	828,000	756,000	684,000	612,000	540,000	3,420,000	
재원 조달	828,000	756,000	684,000	612,000	540,000	3,42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828,000	756,000	684,000	612,000	540,000	3,420,000
	지방세	828,000	756,000	684,000	612,000	540,000	3,42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관계법령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 ③(생략)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상금) ① 보상금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한다.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③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손자녀일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⑥ 보상금의 지급 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 가구(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38조(보상의 정지) ①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6.(생략)

②~⑤ (생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 2012.2.17>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4.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로 한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4·19혁명공로자는 제외한다)의 보상금은 상이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 ④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告示)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 ⑤ 보상금은 월액(月額)으로 하고,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보상의 정지)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1. ~ 5.(생략)

②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③ ~ ⑤(생략)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라 함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전투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